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번호 제277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1. 17.

고성군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01. 17.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5. 31.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수정가결

2. 청구대표자: 박 완 욱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의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안을 발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현대화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 기준 변경(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1) 조 례 명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2) 대 표 자 : 박완욱

- 3) 청구일자 : 2023. 8. 31.
- 4) 청구취지
 -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요청함.
 -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등
- 5) 서명기간 : 2023. 9. 4. ~ 12. 4.(3개월)
- 6)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 2023. 11. 16.
- 7) 청구권자 수 요건미충족 보정안내 : 2023. 12. 8.
- 8) 주민조례 보정청구인 명부 제출 : 2023. 12. 20.
- 9)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12. 26. ~ 2024. 1. 4.
 - 필요연서수 : 906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1/50 이상)
 - 유효서명인수 : 927명
- 10)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회부 : 2024. 1. 5.
- 11) 수리 심의 결정 : 2024. 1. 9.
- 12) 입법예고 : 생략
 - 「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p39 Q&A),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조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4조의 기존 축사의 증·개축 기준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1]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에서 정한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관련내용 변경 연혁과 개정안 개요(참고 1) 및 경남도내 타 군부 현황(참고 2)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관련내용 변경 연혁 및 개정안 개요

구 분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m)									
	소	말	양염소	시슴	젖소	닭	개	돼지	메추리	오리
제정 ('11. 8. 9.)	200	200	200	200	200	1,000	500	500	1,000	1,000
개정 - 1차 ('12. 4.27.)	200	200	2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개정 - 2차 ('15.10.28.)	200	200	2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개정 - 3차 ('19. 3.27.)	200	200	200	200	500	700	700	1,000	700	1,000
금회 개정안	150 (육우 포함)	150	150	150	300	500	500	700	1,000	1,000
증감 (현행 대비)	감 50				감 200			감 300	증 300	변동 없음

[참고 2] 경남도내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현황

구 분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m)							기존시설의 증축 (현대화 및 악취저감)
	소	염소	젖소	닭	개	돼지	오리	
의령군	250	250	250	1,000	1,000	1,000	1,000	20% 범위내
함안군	200	200	200	700	700	700	700	증축 불가
창녕군	300	300	500	500	1,000	1,000	500	30% 범위내
남해군	200	200	200	500	1,500	1,500	500	20% 범위내
하동군	200	200	300	1,000	1,500	1,500	1,000	20% 범위내
산청군	800	800	800	1,500	800	1,500	1,500	증축 불가
함양군	250 ~500	250 ~500	250 ~500	1,500	1,500	1,500	1,500	30% 범위내
거창군	200	300	300	800	800	800	800	20% 범위내
합천군	250	250	250	700	700	700	700	20% 범위내
고성군 (현행)	200	200	500	700	700	1,000	1,000	50% 범위내
최단(원화)	200	200	200	500	700	700	500	50%
최장(규제)	800	800	800	1,500	1,500	1,500	1,500	증축 불가

- (안 제4조) 기존 시설의 증·개축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시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시설 기준: 별표 1)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 기준일(2012. 4. 27. 현행 조례 1차 개정일)에 대해 양계의 경우 양성화 시점 이후의 면적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축종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청구된 안전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향후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주민 동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축산업 발전 유도 및 주민의 환경권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6. 토 론: 없음

7. 심사결과: 2024. 5. 31. 수정가결

붙 임: 1. 수정안 제안서

2.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3. 수정안 대비표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770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2. 수정내용

제4조제1호 중 “1/5이상(단, 소는 2/3)” 을 “5분의1 이상” 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1/5이상(단, 소는 2/3)” 을 “5분의1 이상” 으로 한다.

[별표] 1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육우 포함), 젓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를 “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사육제한거리 “150m” 는 “200m” 로 “300m” 는 “500m” 로 “500m” 는 “700m” 로 “700m” 는 “1,000m” 하며, 사육제한 축종 “개, 닭” 은 “닭, 메추리, 개” 로 “오리, 메추리” 는 “돼지, 오리” 로 한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5이상(단, 소는 2/3)” 을 “5분의1 이상” 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1/5이상(단, 소는 2/3)” 을 “5분의1 이상” 으로 한다.

〔별표〕 1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육우 포함),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를 “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사육제한거리 “150m” 는 “200m” 로 “300m” 는 “500m” 로 “500m” 는 “700m” 로 “700m” 는 “1,000m” 하며, 사육제한 축종 “개, 닭” 은 “닭, 메추리, 개” 로 “오리, 메추리” 는 “돼지, 오리”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제4조(기존시설의 증·개축) (현행과 같음)</p> <p>1.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u>1/5 이상(단, 소는 2/3)</u>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단, 양계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p> <p>2. 개축: (생략)</p>	<p>제4조(기존시설의 증·개축) (현행과 같음)</p> <p>1. ----- ----- <u>5분의1 이상</u> ----- ----- ----- -----</p> <p>2. 개축: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생략)</p> <p>1. ~ 2. (생략)</p> <p>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u>1/5이상(단, 소는 2/3)</u> 동의를 득할 것</p>	<p>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5분의1 이상</u> ----- -----</p>

[별표 1] (개정안)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제2조 관련)

구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방류시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 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	차량 출입 시설	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의 오염 제거 시설 설치
	액비의 이송	액비의 이송과 관련된 배관은 고정식으로 하되 상차를 위한 운반구는 이송차량에서 접속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육우 포함),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 (수정안)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제2조 관련)

구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방류시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 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	차량 출입 시설	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의 오염 제거 시설 설치
	액비의 이송	액비의 이송과 관련된 배관은 고정식으로 하되 상차를 위한 운반구는 이송차량에서 접속
예외사항	<u>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별표 2] (개정안)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제한거리	사육제한축종
<u>150m</u>	소(육우 포함),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u>300m</u>	젖소
<u>500m</u>	개, 닭
<u>700m</u>	돼지
<u>1,000m</u>	오리, 메추리

[별표 2] (수정안)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제한거리	사육제한축종
<u>200m</u>	소(육우 포함),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u>500m</u>	젖소
<u>700m</u>	닭, 메추리, 개
<u>1,000m</u>	돼지, 오리